

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본 조례안은 '98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
되어 동년 월 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정부의 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인구 5,000명미만인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
- 동 주민자치 센터로 기능전환을 통한 제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함.

■ 주요골자

- 양1동과 양2동을 1개동으로 통합하여 양동으로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07-36번지(현 양1동사무소)로 함.

■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

■ 검토의견

- 양1동과 양2동을 통합 양동으로 개칭함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는 주민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봄.
- 통합과정에 적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거 선정되어야 할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 임.
- 양동사무소 소재지는 양동 주민 뿐만아니라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서구민들이 편리하고 적정한 위치로 전문위원 개인적 의견으로는 서구 양동 307-36번지의 현 양1동사무소가 객관성을 확보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